

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30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, 법상 위원회 설치시 위원회 명칭·심의사항·구성방법 등은 반드시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함.
- 그런데 「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」는 법상 위원회로서 그 기능이 다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,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,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기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상 위원회 별로 기능을 규정하는 방안 필요. [“법제처 의견” 기획법무과 -5522(2017.4.18.)관련]
- 이에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“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위원의 위촉 및 구성(안 제2조)
 -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
- 위원회 기능 (안 제4조)
 - 「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」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
 -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
 -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
 -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

- 제정조례안 : 불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2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불임3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 - 입법예고 : 2017. 10. 17. ~ 2017. 10. 28. (11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방침결정문 : 불임4

< 불임 1 >

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) ①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되,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,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사항 중,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「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 및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.

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2.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계획 등”이라 한다)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4.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

제5조(임기 등) 위원의 임기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”라 한다)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)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 제6조부터 제6조의2까지를 준용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검토의견 제출) 위원은 제4조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현지조사)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의의견 반영)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하며,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및 검토대상 개발계획등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전 검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회의록) ① 제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개회·폐회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명단
3. 검토사항
4. 토의진행사항
5. 위원 발언 내용

6.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
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간사) ① 제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

2.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

3.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

4.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

제14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「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」에서 위촉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원의 임기(연임 조항을 포함한다)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.

소관 실·과		안전사회지원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안전사회지원과장 정 송 자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복구지원팀장 임 효 길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병 식 (행정 2790)

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08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. 12. 6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위원장, 부위원장의 임기 및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좀더 명확히 하고,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함.(안 제3조)

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
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임기 등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
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5조(임기 등) <u>위원의 임기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”라 한다)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임기 등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